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併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5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4호 중 “경관”을 “경관(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액기”를 “수액기(냉매저장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정격출력”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으로, “입열량”을 “입열량(heat input)”으로, “비체적”을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라) 중 “피트”를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압축·인장·굽힘·비틀림·열 등의 외력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라)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4) 중 “유분리기”를 각각 “기름분리

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1)라)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나)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4) 중 “정격출력”을 “정격 출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아목 중 “도막(塗膜)”을 “도막(도료 도포막)”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 중 “입회 하에”를 “참관하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31의2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다) 중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 · 발파작업 · 차수공사”를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 · 발파작업 · 물박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호 다목3)바) 중 “이격할”을 “거리를 둘”로 한다.

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6 제1호 검사장비란 중 “자분탐상시험설비”를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허용응력”을 “허용 응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허용응력”을 “허용 응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제6호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심도”를 “깊이”로 한다.

제2조(「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기구명기(自己救命器)”를 “개인용 구명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를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을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기구명기”를 “개인용 구명장비”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 중 “수불(受拂)”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풍교(風橋)”를 “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로 한다.

제3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조(「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표품(標品)”을 “표본품”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연와조дук”을 각각 “벽돌구조дук”으로 한다.

제5조(「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의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빙점”을 “어는점”으로, “경도”를 “경도(단단한 정도)”로, “입도”를 “입자 크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피혁은면균열”을 “가죽은면균열”로, “입도”를 “입자 크기”로, “피혁의”를 “가죽의”로, “자분탐상시험”을 “자분탐상시험(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로, “금속조직(조직사진·금속상·결정입도·침탄탈탄깊이·유효경과깊이등)”을 “금속조직[조직사진·금속상·결정입자 크기·침탄(탄소성분을 강철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탈탄 깊이·유효경과 깊이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단락차단성능시험”을 “단락(短絡)차단성능시험”으로, “광학적 특성시험(광속·조도·휘도·굴절률·분광특성등)”을 “광학적 특성시험[광속·조도(밝기)·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굴절률·분광특성 등]”으로 한다.

제6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란 중 “라이센싱”을 “기술의 사용”으로 한다.

제7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굴착심도(掘鑿深度)”를 “굴착 깊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6조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7) 중 “유분리기”를 “기름분리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6) 중 “유분리기”를 “기름분리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6) 중 “유분리기”를 “기름분리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1)가)(1)의 (나) 장치분야란 중 “경도”를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다)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응력”을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으로 하며, 같은 1) 바) 중 “절연용”을 “절연용(전류 차단용)”으로 하고, 같은 1) 사)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매설심도”를 “매설깊이”로 하며, 같은 1) 차)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 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 중 “심도미달”을 “깊이미달”로 하며, 같은 2) 다) 중 “매설심도”를 “매설 깊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나)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0)가) 중 “성상과”를 “성질 및 상태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나) 중 “외함”을 각각 “외부상자”로 하며, 같은 목 2)라) 중 “배관을 피트”를 “배관을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로 하고, 같은 2) 아) 중 “저수호안”을 “저수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이격거리”를 “거리”로, “직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타목 중 “외부하청업자”를 “외부하도급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을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로, “차수공사”를 “물막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나)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입회아래”를 “참관 아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심도”를 “깊이”로 한다.

제8조(「무역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단서 중 “기초굴착공사”를 “기초굴착(땅파기)공사”로 한다.

제10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로, “사양”을 “설명”으로 한다.

제11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신기술 인증 신청서 작성방법란 중 “인조/천연 피혁”을 “인조/천연가죽”으로, “슬러지”를 “침전물(슬러지)”로 한다.

제12조(「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각인”을 “각인(刻印: 새김도장)”으로 한다.

제1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예정대차대조표”를 “예정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별표 5 중 “바이오디젤”을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처분내용란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전단 중 “연광(鉛鑛)”을 “연광(납광)”으로 한다.

제15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8 중 “입회시험”을 “참관시험”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감안”을 “고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제16조(「석유광산안전규칙」의 개정)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컨텐츠이트”를 “초경질원유”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유전안전계원 :”을 “유전안전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안전계원 :”을 “기계안전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안전계원 :”을 “전기안전계원:”으로,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약·발파안전계원 :”을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안전계원 :”을 “환경안전계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분”을 “기름성분”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로프와 ? 라인”을 “로프와 캐트라인”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곡”을 “만곡(굽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 라인)”을 “(캐트라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라인”을 “캐트라인”으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라인”을 “캐트라인”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 라인의 사용상 주의)”를 “(캐트라인의 사용상 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라인”을 “캐트라인”으로, “케이싱파이프”를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46조 중 “? 라인”을 “캐트라인”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두”를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자분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를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튜빙파이프”를 “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유정내에”를 “유정 내에”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정두”를 각각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초크매니폴드”를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이버터방식”을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으

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멘팅을”을 “시멘트 메우기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멘팅을”을 “시멘트 메우기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한”을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도”를 “깊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것 : 밀폐정두 압력”을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한 것 :”을 “않은 것:”으로, “수직심도”를 “수직 깊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직심도”를 각각 “수직깊이”로, “것 :”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직심도”를 “수직깊이”로, “것 :”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두설비”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두설비”를 각각 “정두장치”로, “정두에”를 “정두장치에”로, “각호”를 “각 호”로, “심도”를 “깊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 : 밀폐정두압력”을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병용한 정두설비중”을 “겸한 정두장치 중”으로, “밀폐정두압력”을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것 :”을 “않은 것:”으로, “삽입예정수직심도의 미터수에 0.1을”를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로, “병용한 정두설비중”을 “겸한 정두장치 중”으로, “삽입예정수직심도의 미터수에 0.07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7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직심도 1천미터 미만의 것 :”을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으로, “수직심도의”를 “수직깊이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직심도 1천미터 이상의 것 :”을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밀폐정두압력”을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수직심도”를 “수직깊이”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밀폐정두압력”을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스테빌라이저플랜트”를 “스테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등침하”를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6조제2호 단서 중 “가스하이드레이트”를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두구”를 “정두장치의 입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두구주위에는”을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에는”으로 한다.

제69조제4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72조 본문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으로,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심도”를 “사용깊이”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때외에는”을 “때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충신내에 장입할”을 “충신 내에 넣을”로, “잠근후에”를 “잠근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통시험은”을 “전류검사는”으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성토 또는 절토”를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로 한다.

제86조제3호 본문 중 “내화성”을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방”을 “둑”으로, “계획중인”을 “계획 중인”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한다.

제100조 중 “하천제방”을 “하천둑”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방”을 “둑”으로, “계획중인”을 “계획 중인”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분압력”을 “자가분출압력”으로 한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항이나 자항시에는”을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7조 중 “앵커링은”을 “닻은”으로, “하여야 한다”를 “내려야 한다”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앵커링을 한 때에는”을 “닻을 내려 고정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항 또는 자항중에”를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으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앵커링 조작전에 앵커링 장치를”을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로, 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역률계”를 “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외함”을 “외부 상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계류”를 “고정”으로 한다.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7조 중 “이수(泥水)를”을 “흙탕물을”로 한다.

제1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계류”를 “고정”으로 한다.

3. 표지장치

8.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제139조제1항 중 “자분”을 “자가분출”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한”을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과지

(침전지)의 제방”을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으로 한다.

제147조 중 “이수”를 “흙탕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148조제2항 중 “오일펜스, 스키머”를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로 한다.

제150조 중 “정두부근”을 “정두장치 부근”으로, “정두 그”를 “정두장치 그”로,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상태”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2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 “(연도 및 연통)”을 “(연기 통로 및 연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를 “연기 통로”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를 “연기 통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4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1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제163조제2항 중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폐기”를 “스위치”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나충전부”를 각각 “노출충전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외함”을 “외부 상자”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흡출콕크를”을 “흡입 배출 콕을”로 한다.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실의 수위”를 “물높이”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유산”을 “황산”으로 한다.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헬리컬기어”를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로 한다.

제1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작업장 : 300룩스”를 “작업장: 300룩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업장 : 150룩스”를 “작업장: 150룩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작업장 : 70룩스”를 “작업장: 70룩스”로 한다.

제208조 중 “전주”를 “전봇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중 “초크라인”을 “초크라인(유정 내 압력조절을 위해 가스, 원유, 흙탕물 등을 배출하는 통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킬라인”을 “킬라인(고압가스 분출 방지 및 압력중화를 위한 물과 흙탕물 주입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어큐물레이터”를 “축압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아목 중 “어큐물레이터”를 “축압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정두장비”를 “정두장치”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어큐물레이터”를 “축압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2)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어큐물레이터”를 “축압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2)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한다.

제17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스울(usance울)”을 “유전스울

(기한부 어음 금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흙후드(fume hood)”를 “흙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의 검사장비란 중 “도막경도 시험기”를 “도막(도료 도표막) 경도 시험기”로 한다.

제18조(「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 및 2) 본문 중 “화차”를 각각 “화물열차”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차별”을 “화물열차별”로, “화차”를 “화물열차”로 한다.

제19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20조(「소재·부품통계조사규칙」의 개정) 소재·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지 조사를 통하여”를 “실제조사를 통해”로 한다.

제21조(「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재사항란 중 “중요사양”을 “중요 규격”으로 하고, 같

은 표 제3호의 기재사항란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2)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응력집중”을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집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후단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2)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 (나)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하며, 같은 호 자목(1) 본문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를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마) 중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절토”를 “절토(땅깎기)”로 하며, 같은 (1) (사)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으로 하고, 같은 목 (2)(다)①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며, 같은 (2) (마) 표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하고, 같은 (2) (바) 단서 중 “심도”를 “깊이”로 하며, 같은 호 카목(4) 후단 중 “내화성”을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6) 전단 중 “감안”을 “고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2) 본문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

고, 같은 호 자목(2) 중 “절연용물질”을 “절연용(전류 차단용) 물질”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피그취급장치”는 “피그(pig)취급장치(배관 내의 이물질 제거 및 이상 유무 파악 등을 위한 장치)는”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가목(1) 중 “국부적으로”를 “부분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사면활동”을 “사면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나목(4) 및 같은 호 다목 (1) 중 “사면활동”을 각각 “사면 활동”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피복사양”을 “피복 품목”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매설심도”를 “매설 깊이”로 한다.

제2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탄”을 “숯”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목탄”을 “숯”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도하여야”를 “제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속플렉시블호스”를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마목 본문 중 “관경(管徑)”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72조의7제2호 중 “굴착심도(掘鑿深度)”를 “굴착(掘鑿) 깊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2조의10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2조의11제2항 및 제3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3)자)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고, 같은 목 8)나)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관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10)바)(2) 중 “캐노피”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압력상승 방지”로 하며, 같은 1) 파)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으로 하고, 같은 목 2)하)(4)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사)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

고, 같은 호 라목1)가) 중 “배관경도”를 “배관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가) 중 “배관경도”를 “배관 경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1)가) 중 “배관경도”를 “배관 경도”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압력상승 방지”로 하고, 같은 아) 단서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나)(4) 및 (6)부터 (8)까지 중 “외함”을 각각 “외부상자”로 하며, 같은 목 2)다)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하고, 같은 2) 바) 중 “절연용”을 “절연용(전류 차단용)”으로 하며, 같은 2) 차)(4) 중 “피트”를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로 하고, 같은 2) 하)(1)(마)① 중 “(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을 “[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으로, “이격 거리”를 “거리”로, “직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2)하)(1)(사)③ 및 나목3)나)(2) 중 “매설심도”를 각각 “매설 깊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나)의 진단항목란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압력상승 방지”로 하고, 같은 아) 단서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나)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2)사)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아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속 커플러

5) 안전 커플링

별표 10의2 제2호가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스울(usance울)”을 “유전스울(기한부 어음 금리)”로 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별표 16 중 “하청업자”를 각각 “하도급업자”로 한다.

별표 18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퀵커플러”를 “신속 커플러”로 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3) 본문 중 “액봉(液封) 방지”를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압력상승 방지”로 하고, 같은 목 7)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5)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한다.

별표 20의2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윗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천공작업”을 “구멍 뚫기(천공)작업”으로, “차수공사”를 “물막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나) 및 같은 목 3)마)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며, 같은 3) 바) 중 “이격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심도”를 “깊이”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가목 중 “건설노임단가”를 “건설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기재 요령란 제9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24조(「에너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란 중 “ARS”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한다.

제2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의 적용범위란 제1호 중 “헤더”를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로 하고, 같은 표 축열식 전기

보일러의 적용범위란 중 “정격소비전력”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소비전력”으로 하며, 같은 표 1중 압력용기란 제4호 중 “비점(沸點)”을 “끓는 점”으로 하고, 같은 표 요로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로
(療爐:
고온가열
장치)

별표 3의4의 용접검사의 적용대상란 중 “경판”을 “경판(동체의 양 끝 부분에 부착하는 판)”으로 한다.

별표 3의6의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의 대상범위란 중 “수두압(水頭壓)”을 “수두압(水頭壓: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는 단위)”으로 한다.

별표 3의8 제1호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로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감면대상 국유재산란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3쪽 유의사항란 중 “외자”를 “외국자본”으로 한다.

제27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실내차압”을 “실내 차압(압력차)”으로 한다.

제28조(「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29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감면대상국유재산란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30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6쪽 중 제5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1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 중 “조정지(調整池)”를 “조정지(수력발전용 유량 조절 못)”로 하고, 같은 1) 다) 중 “첨두별(尖頭別) 유효낙차”를 “유효낙차”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가)(1)(라)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나)(나) 및 (다)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라)공사의 종류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2)가)(7)(가)(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2)가)(7)(가)(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전선로[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 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해당한다]

별표 8 제2호 마) 방수로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호 바)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및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호 다) 보일러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 연료연소설비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며,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고, 같은 호 가) 증기터빈설비의 기재사항란 (4)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발전기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 전선로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건물쪽”으로 하고, 같은 호 다. 전선로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건물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단선결선도”를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옥측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1)(라)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나)(나) 및 (다)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공사의 종류 (라)공사의 종류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2)가)(7)(가)(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2)가)(7)(가)(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마) 방수로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호 바)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전기설비

의 종류란 및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호 다) 보일러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 연료연소설비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며,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고, 같은 호 가) 증기터빈설비의 기재사항란 (4)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발전기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 전선로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건물쪽”으로 하고, 같은 호 다. 전선로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건물쪽”으로 한다.

별표 5의 인입구 배선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육안”을 “육안(맨눈)”으로 하고, 같은 표 인입구 배선 및 옥내·옥외·옥측 배선의 점검항목 중 “옥측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2)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가목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한다.

제33조(「전기사업회계규칙」의 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제35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원시설 : ”을 “열원시설: ”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발전기, 소각로 등]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지개산서”를 “수지계산서”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

4호 중 “수지개산서”를 각각 “수지계산서”로 한다.

별표 3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수지개산서”를 “수지계산서”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5. 공사비계산서

별표 3의2 제1호 중 “사위”를 “속임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수지개산서”를 “수지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수지개산서”를 각각 “수지계산서”로 한다.

제36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첨부하기에”를 “첨부하기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권한을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합격증의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중 “실측치”를 “실측값”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 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 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 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 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 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몸통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뼈기모양 압박 골절 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 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파열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개뉴 골절 등을 말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위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허리뼈 골절 5. 위팔뼈몸통 골절 6. 노뼈 먼쪽 골절 7. 자뼈 몸쪽부위 골절 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10.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 11. 아킬레스힘줄 파열 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5. 두덩뼈·궁둥뼈·장골의 단일 골절 6. 단순 슬개골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 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위상성 거미막밑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절상과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봉우리빛장관절 사이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몸 표면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위관절용기 꺾 골절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갈비뼈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 는 제외한다) 7. 족근골 골절(목말뼈 , 중골 은 제외한다)

		8. 중족골 골절 9. 발목관절부위 뺨 10. 갈비뼈 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빼어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사이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위 뺨 5. 모든 불완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뺨 2. 손가락관절 탈구 및 뺨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태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태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골편(骨片)이 어긋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등 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1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한쪽시아결손·시아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

		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 흉골(복장뼈) · 갈비뼈 ·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한쪽시아결손, 시아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

		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 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가락뼈 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략)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u>경판</u> 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1. ~ 23. (현행과 같음) 24. ----- <u>경판</u> (<u>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25. ~ 28. (생략) ② ~ ⑤ (생략)	2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u>하여야</u>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 4. (생략) 4의2. ~ 6. 삭제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u>수액기</u> 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① ----- ----- ----- ----- <u>해야</u> ----- -----. -----. 1. ~ 4. (현행과 같음) 7. ----- ----- ----- <u>수액기(냉매저장기)</u> -----

변경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u>통할하며</u> ,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 -- <u>총괄하며</u>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u>관리하여야</u>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 ----- ----- ----- ----- ----- <u>관리해야</u> ----- ----- ----- -----
1. 안전모·안전등 및 <u>자기구명기</u> (自己救命器) 등 개인장비	1. ----- <u>개인용 구명장비</u> -----
2.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산가스측정기·산소측정기 및 <u>선진천공기</u> (先進穿孔機) 등 측정장비	2. ----- ----- ----- ----- <u>선진천공기</u> (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생략)	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u>비치하여야</u> 한다.	② ----- ----- ----- <u>비치해야</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선진시추공</u> (先進試錐孔)의 위치·방향 및 길이	6. <u>선진시추공</u> (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 ----- ----- ----- ----- -----
1. <u>자기구명기</u> 또는 간이구명기	1. <u>개인용 구명장비</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② (생략)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	③ -----

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정비 및 <u>수불</u> (受拂)에 관한 사항	4. ----- ----- ----- <u>출납</u> ----- -----
5. 화약·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 <u>수불</u> ·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5. ----- ----- <u>출납</u>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④ ----- ----- ----- <u>준수해야</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u>수불</u> 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6. ----- ----- ----- <u>출납</u>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⑤ 화약·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⑤ ----- -----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 <u>준수해야</u> -----.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u>수불</u>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1. ----- ----- ----- <u>출납</u>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u>작성</u> <u>하여야</u> 한다.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 ----- ----- <u>작성</u> <u>해야</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운반갱도·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 <u>풍교</u> (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풍장·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3. ----- ----- ----- ----- ----- ----- ----- <u>기류혼합방지시설</u> (<u>풍교</u>)-----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수료) ①법 제44조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이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의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와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u>감안</u> 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3조(수수료) ①----- ----- ----- ----- ----- ----- ----- ----- <u>고려</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도면 또는 <u>표품(標品)</u> 은 반환하지 <u>아니한다</u> . ③·④ (생략)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표본품</u> ----- <u>않는다</u> . ③·④ (현행과 같음)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시료의 봉합·날인) 시험의 되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u>소</u> <u>정의</u> 봉합 또는 날인을 의뢰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u>제</u> <u>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의뢰자 는 기본료 300원에 봉합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 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u>납부하여</u> <u>야</u> 한다.	제7조(시료의 봉합·날인) ----- ----- <u>정</u> <u>해진</u> ----- ----- ----- <u>제</u> <u>출해야</u> -----. ----- ----- ----- ----- <u>납부해야</u>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 전조치 등) ① (생략)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 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 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 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 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 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 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 장 <u>입회</u> 여부를 포함한 별 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 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 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 성할 것 나. (생략) 2. 3. (생략)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 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가. ----- ----- ----- ----- ----- -- <u>참관</u> ----- ----- ----- ----- ----- ----- 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 -----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 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u>굴착 심도(掘鑿深度)</u> 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2. ----- <u>굴착 깊이</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u>직경</u> 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4. ----- <u>지름</u> ----- -----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u>입회</u> 시기 및 방법	4. ----- <u>참관</u>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	제56조(긴급 굴착공사) ----- -----

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u>입회</u>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 ----- ----- ----- ----- ----- <u>참관</u> ----- -----.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생략)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u>입회</u>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u>실시하여야</u> 한다.	② ----- <u>참관</u> ----- ----- <u>실시해야</u> -----.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u>입회</u>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u>확인하여야</u> 한다.	③ ----- <u>참관</u> ----- ----- <u>확인해야</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2조(예산의 승인) ① ----- ----- ----- ----- ----- ----- ----- ----- <u>제출해야</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u>추정대차대조표</u>	2. ----- -- <u>추정재무상태표</u>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u>대차대조표</u> 및 그 부속 서류	3. ----- <u>재무상태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3조(결산의 승인) ----- ----- ----- ----- ----- <u>제출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의 <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	2. ----- <u>재무상태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 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공사착공일 등) ----- ----- -----.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 공사를)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1.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45조의16제1항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② 공단은 법 제45조의16제3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차대조표 3. ~ 7. (생략)	제44조의4(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 ----- 제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6. ----- 재무상태표----- ----- 예정재무상태표 ② ----- ----- 첨부해야 ----. 1. (현행과 같음) 2. 재무상태표 3. ~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u>신청</u>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 ----- ----- ----- ----- ----- ----- <u>신청</u> 해야 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u>탈모</u>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 <u>모</u> <u>자를 쓰지 않은</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u>각 호</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u>컨덴세이트</u> ,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반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3. ----- -- <u>초경질원유</u> ----- ----- -----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안전위원의 관리사항) 안전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제27조(안전위원의 관리사항) ----- ----- ----- -----.
1. <u>유전안전위원</u> : 유전내에서 다른 안전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1. <u>유전안전위원</u> : ----- ----- ----- -----
2. <u>기계안전위원</u> :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u>기계안전위원</u> : ----- -----
3. <u>전기안전위원</u> :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정비 및 <u>수불</u> 등에 관	3. <u>전기안전위원</u> : ----- ----- ----- <u>출납</u> -----

한 사항	-----
4. <u>화약·발파안전계원</u> : 화약류의 보관· <u>수불</u> ·운반·휴대·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4. <u>화약·발파안전계원</u> : ----- ----- <u>출납</u> ----- -----
5. 삭 제	
6. <u>환경안전계원</u> :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6. <u>환경안전계원</u> : ----- ----- -----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③----- ----- <u>준수해야</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충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u>수불</u>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 ----- ----- <u>출납</u>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화약·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④----- ----- <u>준수해야</u> ----- --.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u>수불</u> 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할 것	1. ----- ----- ----- <u>출납</u>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⑥----- ----- <u>준수해야</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생물학적산소요구량· <u>유분</u>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2. ----- ----- ----- ----- <u>기름성분</u>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절 로프와 ? 라인	제2절 로프와 캐트라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유지·관리 및 사용은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u> 한다.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마모·단선 또는 <u>만곡</u> 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4. ----- ----- <u>만곡(굽음)</u> ----- -----
제44조(<u>? 라인</u>) ? 라인의 사용은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u> 한다.	제44조(<u>캐트라인</u>) <u>캐트라인</u>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노후된 <u>? 라인</u> 은 사용하지 말 것	3. ----- <u>캐트라인</u> ----- ---

제45조(? 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아니된다.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 · ? 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 · 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분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 · 튜빙파이프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45조(캐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 캐트라인 -----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안 된다.

제46조(검사 등) ----- 캐트라인 ----- 취해야 -----.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① -----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

② -----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 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정 내에 ----- 정두장치 -----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정두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2. 정두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가 사이에 설치할 것
3. 정두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4. (생략)
5.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

1. 정두장치 -----
2. 정두장치 -----
3. 정두장치 -----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시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현행과 같음)
5.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 ----- 정두장치 -----

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 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 치를 할 것	----- ----- ----- -----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 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 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 추작업은 다음 <u>각호의 기준에</u> <u>의하여야</u> 한다.	③----- ----- ----- ----- ----- <u>각 호의 기준에</u> <u>따라야</u> ----.
1.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 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 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과 이프의 삽입과 <u>시멘팅을</u>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1. ----- ----- ----- <u>시멘트 메우기</u> <u>를</u> -----
2. <u>시멘팅을</u> 한 때에는 가압 등 의 방법에 <u>의하여</u> 그 효과를 확인할 것	2. <u>시멘트 메우기를</u> ----- ----- <u>따라</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 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 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u> 한 다. 다만, <u>자분채취장치</u> 를 설치 한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 -----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 <u>자가분출채취장치</u> ---- ----- <u>그렇지 않다</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 <u>정두</u> 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 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 <u>정두장치</u>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 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 출방지장치는 다음 <u>각호의 기준</u> <u>에 의한</u>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 압력을 갖춘 장치를 <u>사용하여야</u> 한다.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 고사용압력) ----- ----- <u>각 호의 기준</u> <u>에 따른</u> ----- ----- <u>사용해야</u> -----.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u>심도에</u> 따른 압력	1. ----- ----- ----- <u>깊이</u> -----
가.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 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u>것</u> : <u>밀폐정두 압력</u>	가. ----- ----- <u>것</u> : <u>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u> <u>력(밀폐정두압력)</u>
나.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 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u>아니한 것</u> : 제곱센티미터 당 목적층의 <u>수직심도의</u>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 의 중량킬로그램	나. ----- ----- <u>않은 것</u> : ----- ----- <u>수직깊이</u> ----- -----

1천미터 미만의 것 : 매 제곱
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심
도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
치의 중량킬로그램

4.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심도
1천미터 이상의 것 : 매 제공
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
(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
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
방지장치와 병용하는 것에 한
한다)의 경우에는 밀폐정두압
력

2.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
(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

1천미터 미만의 것: -----
----- 수직깊
이의 -----

4. -----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

②-----
----- 정두장치 -----

----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

----- 검하는 -----
----- 밀폐 시 꼭 -----
대기 부분의 압력

2. 양호

출방지장치와 병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심도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 (생략)

제61조 (자분채취장치) ① 석유생산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분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 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분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정두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가스플랜트) ①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

 결하는

이-----

3. (현행과 같음)

제61조 (자가분출채취장치) ①---

----- 자

가분출채취장치 -----

② 자가분출채취장치 -----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가스플랜트) ①-----
 --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설치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석유저장탱크) -----

한다)의 설치는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u> 한다.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1. 기초는 지반이 <u>부등침하</u> 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1. ----- <u>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6조(가스저장탱크)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한냉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u>가스하이드레이트</u> 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u>설치하여야</u> 한다.	2. -----. ----- <u>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u> ----- <u>설치해야</u> ----.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u> 한다.	제68조(화공법)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착화정의 <u>정두구</u> 에는 적절한	4. ----- <u>정두장치의 입구</u> ---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
5. 착화정의 <u>정두구주위</u> 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5. ----- <u>정두장치의 입구 주위</u> 에는 -----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수압파쇄법)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두</u> 또는 압입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압입펌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	4. <u>정두장치</u> ----- -----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u>아크용접</u>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u>의하여야</u>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u>아니할</u>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2조(파이프의 접합) ----- ---- <u>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u> ----- ---- <u>따라야</u> ----. -- <u>않을</u> -- -----.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u> 한다.	제78조(천공총의 관리)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1.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u>사용심도</u> 에서의 이수압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1. ----- -- <u>사용깊이</u>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
각 호의 기준에 <u>의하여야</u> 한다.	----- <u>따라야</u> -----.
1. <u>정두</u> 에는 폭발압력을 견딜	1. <u>정두장치</u> -----
수 있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
것	--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u>개</u>	2. ----- <u>스</u>
<u>폐기</u> 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	<u>위치</u> -----
도록 하고, 점화후 회로가 자	-----
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
것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제84조(준수사항) -----
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u>준수</u>	----- <u>준수</u>
<u>하여야</u> 한다.	<u>해야</u> -----.
1. <u>정두</u> 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	1. <u>정두장치</u> -----
용할 것	-----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u>개</u>	2. ----- <u>스</u>
<u>폐기</u> 에는 점화할 <u>때외</u> 에는 자	<u>위치</u> ----- <u>때 외</u> 에는 --
물쇠를 잠그어 둘 것	-----
3. 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	3. -----
를 <u>충신내</u> 에 <u>장입</u> 할 때에는	-- <u>충신 내</u> 에 <u>넣을</u> -----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	-----
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
안전장치를 <u>잠근후</u> 에 할 것	----- <u>잠근 후에</u> -----

4. 전기식 천공총의 <u>도통시험</u> 은	4. ----- <u>전류검사는</u>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	-----
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
의하여 행할 것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	제85조(지하매설) -----
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	-----
다.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성토</u> 또는 <u>절토</u> 의 경사면 부	5. <u>성토(흙쌓기)</u> 또는 <u>절토(땅깎</u>
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	<u>기)</u> -----
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	-----
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	-----
록 매설할 것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	제86조(지상설치) -----
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	-----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지지물은 철근콘크	3. -----
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
이상의 <u>내화성</u> 을 가진 것일	---- <u>내화성(불에 견디는 성</u>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해당	<u>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지지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을	--. -----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 <u>그렇지 않다</u> .

1. ~ 5. (생략)

6. 제방, 하천관리시설의 기준 또는 계획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하상변동·패임·댛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에 매설할 것

7. (생략)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자분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생략)

제112조(예항 등) 예항 및 자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둑-----
----- 계획 중인 -----
----- 않으며 -----

----- 않는 -----

7. (현행과 같음)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각 호-----
-----.

1. 자가분출압력-----

2. (현행과 같음)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예항이나 자항시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 (생략)

제117조(해양시추리그의 고정) 해양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의 앵커링은 해양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앵커링을 한 때에는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충분한 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2. (생략)

3. 해양시추리그의 예항 또는 자항중에 발생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

3. (현행과 같음)

제117조(해양시추리그의 고정) -----

----- 맞은 -----

----- 내려야 한다.

제119조(준수사항) -----
----- 준수해야 -----.

1. 맞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 -----

2. (현행과 같음)

3. -----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 -----

제120조(준수사항) -----
----- 준수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 및 선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앵커링 조작전에 앵커링장치 <u>를</u> 검사할 것	2. ----- ----- -- <u>닷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u> -----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u> 한다.	제122조(배전반)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전압계·전류계·전력계· <u>역률계</u>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3. ----- ----- -- <u>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u> -----
제124조(접지공사)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u>외함</u> 에는 접지공사를 <u>하</u> <u>여야</u> 한다.	제124조(접지공사) ①----- ----- ---- <u>외부 상자</u> ----- <u>해</u> <u>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u>각호의 시설 또는</u> 기구를 <u>비치하여야</u> 한다.	제126조(안전시설) ----- ----- <u>각 호</u> ----- --- <u>비치해야</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표지·기적·무적 및 신호기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 <u>을 말한다. 이하 같다</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u>계류</u> 에 필요한 장치	9. <u>고정</u>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u>이수(泥水)</u> 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제127조(이수자재 등) ----- ----- <u>흙탕물을</u> ----- ----- -----.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u>비치하여야</u> 한다.	제138조(안전시설 등) ----- ----- ---- <u>비치해야</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표지·기적·무적 및 신호기	3. 표지장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목의 <u>살수소화장치</u>	8.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u>살수소화장치</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u>계류</u> 에 필요한 장치	9. <u>고정</u> -----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u>자분</u> 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u>정두</u>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u>설치하여야</u> 한다.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 ----- <u>자가분출</u> ----- ----- ----- ---- <u>정두장치</u> ----- ---- <u>설치해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제146조(점토 및 폐석) ----- -----

기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나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나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나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나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방호를 하여야 한다.

제165조(접지공사) ①유전에 설치

치-----
----- 취해야 ---
---.

③-----
----- 않고 -----

----- 노출충전부-----

----- 취해야 -----
---.

④-----

----- 노출충전부-----

----- 노출
충전부-----

----- 취해야 -----.

⑤-----
-- 노출충전부-----
----- 않도록 -----
----- 해야 -----.

제165조(접지공사) ①-----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흡출판 또는 흡출코크를 설치할 것
6. (생 략)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 (생 략)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남아 있는 카바이트로 인하여 아세틸렌이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수실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 11. (생 략)
12. 알콜·휘발유·타르류·기

----- 외부 상자-----
제67조에 따른 -----
----- 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흡입 배출 코크를 -----
6. (현행과 같음)

제186조(준수사항) -----

----- 준수해야 ---
---.

- 1.·2. (현행과 같음)
3. -----

----- 물높이-----

4. ~ 11. (현행과 같음)
12. -----

류류·유산 그 밖의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할 것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①다음 각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u>설치</u>하여야 한다. 1.·2. (생략) 3. <u>헬리컬기어</u>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 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u>각호의 기준에 의하여</u>야 한다. 다만, 감광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u>그렇지</u> 아니하다. 1.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u>작업장</u> : 300룩스 이상 2.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u>작업장</u> : 150룩스 이상	-----<u>황산</u>----- ----- ----- ----- --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①-----<u>각 호</u>----- ----- ----- <u>설치</u>해야 -----. 1.·2. (현행과 같음) 3. <u>헬리컬기어</u>(나선행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7조(일광 및 조명) ----- ----- ----- <u>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u> -----. ----- --- <u>그렇지</u> 않다. 1. ----- <u>작업장</u>: 300룩스 ----- 2. ----- <u>작업장</u>: 150룩스 -----
---	--

3. 그 밖의 <u>작업장</u> : 70룩스 이상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u>전주</u>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u>취하여</u>야 한다.	3. ----- <u>작업장</u>: 70룩스 ----- --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 -----<u>전봇대</u>----- ----- ----- ----- ----- <u>취하여</u> -----.
--	---

소재·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계의 구분) ①·② (생략)	제6조(통계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u>실지 조사를 통하여</u>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 ----- ----- ----- ----- ----- <u>실</u> <u>제조사를 통해</u> -----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u>	<u>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u>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6(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조의6(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2. ----- 솟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2. ----- 솟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③ (생략)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u>계도하여야</u> 한다.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 ----- ----- ----- ----- ----- ----- ----- ----- ----- ---- <u>계도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2. ----- ----- ----- ----- ----- ----- ----- ----- ----- -----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u>실시하여야</u> 한다.	----- ----- ----- ----- ----- ----- <u>실시해야</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다. ----- ----- ----- ----- ----- ----- -- <u>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u>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 ----- -----

해당하는 공사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마. -----
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관	----- 호
경(管徑)을 변경하는 공사	칭지름-----
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	-----
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	-----
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	통과하는 지점) -----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
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	-----
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
지점을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	2. -----
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 굴착
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	(掘鑿) 깊이-----
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	-----

배관이 매설된 지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4. -----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	-----
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지름-----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
지점	-----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의4제	의 작성 등) ① -----
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	-----
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포함되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일	4. ----- 찬
회 시기 및 방법	관 -----
5. 6. (생 략)	5. 6. (현행과 같음)
② ③ (생 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
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	-----
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	-----
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	-----
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	-----
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	-----

개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	_____
로 한다.	_____.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전기설비 <u>단선결선도</u>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u>단선결선도</u> [<u>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이하 같다).</u> ----- ----- ----- ----- ----- ----- -----.
2. (생략)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 ----- ----- ----- ----- -----

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	-----
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	-----
입구배선 및 옥내(屋內)·옥외	-----
(屋外)· <u>옥측(屋側)</u> 배선, 누전	----- <u>건물쪽 배선</u> -----
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	-----
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u>대</u>	제6조(재무제표) ①----- <u>재</u>
<u>차대조표</u> ·손익계산서·이익잉	<u>무상태표</u> -----
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	-----
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분한	-----
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 ----- ----- ----- ----- ----- <u>각 호</u> ----- -----.
1. <u>열원시설</u> : 물 · 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1. <u>열원시설</u> : ----- ----- ----- ----- <u>각 목</u> -----
가. <u>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 · 발전기, 소각로 등)</u>	가. <u>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 (높은 압력의 액체 · 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발전기, 소각로 등]</u>
나. ~ 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 ----- ----- ----- <u>제출해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u>수지개산서</u>	4. ----- ----- <u>수지개산서</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u>각호</u> 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 ----- <u>에 따라</u> ----- ----- ----- <u>각 호</u> ----- ----- ----- <u>제출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u>수지개산서</u>	2. ----- ----- ----- ----- <u>수지개산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합격의 표시) ①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 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 사대상마다 합격증을 <u>첨부하여</u> <u>야</u> 한다. 다만,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u> <u>니한다</u> .	제22조(합격의 표시) ① ----- ----- ----- ----- <u>첨부해야</u> ----. ----- <u>각 호의 어</u> <u>는 하나</u> ----- <u>그렇지 아</u> <u>않다</u> .
1. 형상이 합격증을 <u>첨부하기에</u> 불가능한 경우	1. ----- <u>첨부하기에</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제 조사업에 관한 다음 <u>각호의 권</u> <u>한을</u>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u>의</u> <u>하여</u>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 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u>법 제</u> <u>19조제1항에 따라</u> ----- ----- <u>각 호의 권</u> <u>한을</u> 제13조제1항 전단에 <u>따라</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합격증의 <u>첨부</u>	3. 제22조제1항 본문에 <u>따른</u> -- ----- <u>첨부</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 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 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u>수지</u> <u>개산서</u>	4. ----- ----- ----- ----- ----- <u>수지</u> <u>개산서</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